

「하이브리드 개인회원 약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b>제2조(회원)</b></p> <p>① ~ ② (생 략)</p> <p>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p>	<p><b>제2조(회원)</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그 밖에</u> ----- ----- -----.</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b>제3조의2(가족카드 발급 등)</b></p> <p>① ~ ③ (생 략)</p> <p>④ 본인회원은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p> <p>⑤ ~ ⑦ (생 략)</p>	<p><b>제3조의2(가족카드 발급 등)</b></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사실을 증명할 책임은</u>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b></p> <p>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p> <p>②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p> <p>③ (생 략)</p>	<p><b>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b></p> <p>① ----- <u>표시됩니다.</u></p> <p>② ----- ----- <u>남은</u> -----.</p> <p>③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휴대폰 메시지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거절이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가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2.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⑤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④ -----  
-----  
-----  
-----  
-----  
-----  
-----  
-----  
-----  
-----  
-----  
-----  
-----  
-----  
-----  
-----  
-----  
-----  
-----  
-----  
-----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2. 대체발급 시 기존상품과 대체상품의 차이 (적립 및 할인 혜택, 이용조건 및 한도 등)
3.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⑤ -----  
-----  
---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  
----- 동의 없이 -----  
-----  
----- 사실에 증명할 책임은 -----

대체카드 발급 시 상품 차이 안내 강화

전자문서 정의 문구 추가 삽입  
법제처 요청  
어문규범 정비  
법제처 요청

<p>은 카드사가 집니다.</p> <p>⑥ (생 략)</p>	<p>-----.</p> <p>⑥ (현행과 같음)</p>	<p>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5조(카드의 관리)</b></p> <p>① (생 략)</p> <p>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u>대여, 양도 또는 담보</u>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p> <p>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단체·재발급으로 인한 <u>구카드를</u>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p> <p>④ <u>제1항 내지 제3항의</u> 이행을 <u>태만히</u>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b>제5조(카드의 관리)</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대여·양도하거나</u> ----- -----.</p> <p>③ ----- ----- <u>중전 카드를</u> ----- -----.</p> <p>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게을리하여</u> ----- -----.</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및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b>제6조(연회비 청구)</b></p> <p>① (생 략)</p> <p>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납 등 <u>분납</u> 청구도 가능합니다.</p> <p>1. <u>제1회차의 분납회비가</u>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p> <p>2.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p>	<p><b>제6조(연회비 청구)</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분할납부</u> -----.</p> <p>1. <u>분할납부 1회차 회비가</u> ----- -----</p>	<p>법제처 용어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용어 자연스러운</p>

<p>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p> <p>③ <u>최초년도</u>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u>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u>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p> <p>④ ~ ⑤ (생략)</p>	<p>2. ----- ----- ----- -----</p> <p>③ <u>최초 연도</u> ----- ----- ----- ----- <u>경우에만 최초 연도</u>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어문규범 정비</p> <p>법제처 요청 일본어 투 정비 어문규범 정비</p>
<p><b>제7조(카드이용 정지)</b></p> <p>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u>이용</u>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p> <p>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u>허위로</u>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p> <p>2.~ 7. (생략)</p>	<p><b>제7조(카드이용 정지)</b></p> <p>① ----- ----- ----- <u>카드이용을</u> ----- ----- ----- ----- ----- -----</p> <p>1. ----- ----- ----- <u>거짓으로</u> ----- -----</p> <p>2.~ 7.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용어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u>목적 달성이</u> 어려운 경우</p> <p>② (생략)</p> <p>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u>날로부터</u>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p> <p>④ (생략)</p>	<p>8. ----- ----- <u>규정된</u> ----- ----- <u>목적을 달성하기</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u>날부터</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용어 자연스러운 표현 및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용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7조의3(카드의 해지)</b></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b>제7조의3(카드의 해지)</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또는</u> ----- ----- -----</p>	<p>법제처 용어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b>제7조의4(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b></p> <p>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p>	<p><b>제7조의4(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b></p> <p>① ----- ----- ----- ----- ----- -----</p>	<p>법제처 용어 자연스러운 표현 및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본 항을</u>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③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u>카드사에게</u>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p> <p>④ <u>전항에 따른</u>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u>차년도</u>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u>일할계산한</u> 금액을 반환합니다.</p> <p>⑤ (생략)</p>	<p>-----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을</u>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카드사에</u> ----- -----.</p> <p>④ <u>제3항에 따른</u> ----- <u>다음 연도</u> ----- ----- ----- ----- ----- <u>일 단위로 계산한</u> -----..</p> <p>⑤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어문규범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 및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 및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8조(카드의 이용 등)</b></p> <p>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u>비대면거래에 있어서</u>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p>	<p><b>제8조(카드의 이용 등)</b></p> <p>① ----- ----- ----- ----- ----- ----- <u>비대면거래에서</u> ----- -----</p>	<p>법제처 요청 일본어 투 정비</p>

<p>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용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p> <p>③ ~ ④ (생략)</p> <p>⑤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u>이용한도를</u>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 ---.</p> <p>② ----- ----- <u>등으로</u> ----- <u>또는 그 밖의</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u>카드 이용한도를</u> -----.</p>	<p>법제처 용어 자연스러운 표현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b>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b></p> <p>① 카드를 해외에서 <u>이용하거나</u>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p>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p> <p>③ <u>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u></p>	<p><b>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b></p> <p>① ----- <u>이용하거나</u> ----- ----- -----.</p> <p>② ----- ----- ----- --- <u>해당</u> -----.</p> <p>③ <u>국내 및 해외 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는 ----- . 다만, IC칩 비밀번호(PIN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이용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u></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용어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용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b></p> <p>① ~ ③ (생략)</p>	<p><b>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b></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카드사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p> <p>⑤ ~ ⑥ (생략)</p>	<p>④ ----- ----- 받은 ----- ----- ----- ----- ----- ----- ----- -----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용어 법령 통일 대상</p>
<p><b>제11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b></p> <p>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생략)</p> <p>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p> <p>2.~ 3. (생략)</p> <p>⑤ ~ ⑥ (생략)</p> <p>⑦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 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p> <p>⑧ ~ ⑨ (생략)</p> <p>⑩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p>	<p><b>제11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b></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 ----- ----- 같은 종류의 ----- -----</p> <p>2.~ 3. (현행과 같음)</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 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사용방법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p> <p>⑧ ~ ⑨ (현행과 같음)</p> <p>⑩ ----- -- 올림되어 -----</p>	<p>법제처 요청 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 소멸예정 포인트 사용방법 안내 강화</p> <p>법제처 요청</p>



<p>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p> <p>⑪ (생략)</p> <p>⑫ 카드사는 <u>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u></p> <p>⑬ (생략)</p>	<p>----- -.</p> <p>⑪ (현행과 같음)</p> <p>⑫ 카드사는 <u>포인트 현금성 사용, 포인트 자동 사용(결제대금 차감)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u></p> <p>⑬ (현행과 같음)</p>	<p>어려운 한자어 정비</p> <p>포인트 자동사 용 편의성 향 상 근거 규정 마련</p>
<p><b>제11조의2(전월실적 안내)</b></p> <p>카드사는 회원의 <u>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 된 전월실적</u>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 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 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p>	<p><b>제11조의2(전월실적 안내)</b></p> <p>----- <u>카드 상품별 부가서비스</u> ----- ----- <u>전월실적 및 전월실적 인정기준, 이에 포 함·제외되는 항목들을</u> ----- <u>앱(App)을</u> -----.</p>	<p>전월실적 인정 기준 안내 강 화</p> <p>법제처 요청</p> <p>외국어 정비</p>
<p><b>제12조(대금결제)</b></p> <p>① (생략)</p> <p>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 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 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 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 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 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u>회원이 해외에 서 사용한 결제 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 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u></p> <p>③ (생략)</p> <p>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u>결제금액에 미달하여</u>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 제하지 못한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p>	<p><b>제12조(대금결제)</b></p> <p>① (생략)</p> <p>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 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 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 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 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 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u>회원이 해외에 서 사용한 결제내역 또는 국내에서 해외가맹점 을 통하여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결제금액보다 적어</u> ----- ----- -----</p>	<p>해외결제 취소 시 환율 손익 부담 기준 명 확화</p> <p>법제처 요청</p> <p>어려운 한자어</p>

<p>한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납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p> <p>*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p> <p>**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p> <p>***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p> <p>⑤ (생략)</p> <p>⑥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p> <p>⑦ (생략)</p> <p>⑧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 공제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p> <p>⑨ ~ ⑰ (생략)</p>	<p>-----</p> <p>-----</p> <p>----- 다음 계산식의 -----</p> <p>----- 다음 날 -----</p> <p>-----.</p> <p>-----</p> <p>-----</p> <p>-----</p> <p>-----</p> <p>-----</p> <p>----- 증빙자료 사본을 -----</p> <p>-----.</p> <p>-----</p> <p>-----</p> <p>-----</p> <p>----- 원금보다 우선하여 상환됩니다. -----</p> <p>-----.</p> <p>-----</p> <p>-----</p> <p>-----</p> <p>-----</p>	<p>정비</p> <p>법제처 요청</p> <p>어려운 한자어 정비</p> <p>법제처 요청</p> <p>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p> <p>어려운 한자어 및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p> <p>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13조(자동이체결제)</b></p> <p>① ~ ② (생략)</p> <p>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p>	<p><b>제13조(자동이체결제)</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법제처 요청</p> <p>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자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u>인출</u>,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p> <p>④ ~ ⑤ (생략)</p>	<p>----- ----- <u>인출</u> <u>하여</u>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b>제17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b></p> <p>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u>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u></p> <p>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p> <p>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3. ~ 6. (생략)</p> <p>④ <u>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u>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⑤ (생략)</p>	<p><b>제17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경우로서</u>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u>----- ----- ----- --</p> <p>3. ~ 6. (현행과 같음)</p> <p>④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 또는 보상신청이 허위로 밝혀지고</u> ----- ----- -----.</p> <p>⑤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18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b></p> <p>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u>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p>	<p><b>제18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u> ----- -----</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p>

<p>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로 정비</p>
<p><b>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b></p> <p>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p> <p>④ (생략)</p>	<p><b>제20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문란하게 하여 -----</p> <p>④ (현행과 같음)</p>	<p>법제처 요청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비</p>
<p><b>제21조(변경사항의 통지)</b></p> <p>① (생략)</p> <p>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p>	<p><b>제21조(변경사항의 통지)</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 ----- -.</p>	<p>법제처 요청 일본어 투정비</p>
<p><b>제24조(변경승인 등)</b></p> <p>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p>	<p><b>제24조(변경승인 등)</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통지하고 -----</p>	<p>법제처 요청 명확한 표현으로</p>

<p>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u>공고</u>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p> <p>④ ~ ⑤ (생략)</p>	<p>----- <u>공고하는 방법</u>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로 정비</p>
<p><b>제27조(관할법원)</b></p> <p><u>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u></p>	<p><b>제27조(관할법원)</b></p> <p><u>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u></p>	<p>공정위 시정요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 조항 개정</p>